

심사보고서

2024년도 과학인재육성 소관 출연계획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16
----------	-----

2023. 10. 18.(수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제412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3년 10월 12일 상정의결)
- 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과학인재국장 김진형)

가. 제안이유

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(안)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: 4억 5천만 원

- 출연목적

- 충북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육성사업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
- 공공 연구성과 확산,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지원 및 투자 연계로 기업성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

- 출연내역 : 충북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1식(4억 5천만 원)

- 기대효과

- 공공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, 특구 내 인프라활용을 통해 기술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과 사업화 성과 창출
- R&D-사업화-재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

○ 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 : 10억 4백만 원

- 출연목적

-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R&D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 기능 수행
- 남·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, 지역산업 지능화·고도화 전략 마련

- 출연내역 : 총 10억 4백만 원

- R&D 인력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1식(6억 4백만 원)
-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1식(2억 원)
-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1식(2억 원)

- 기대효과

- 지역 R&D 거점기관으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, 지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력 확보
-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남·북부권 기업지원 강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·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이 계획안은 ‘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’ 과 ‘충북과학기술혁신원’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것임

나. (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) 충북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대응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음

다. (충북과학기술혁신원) R&D인력 인건비 및 남·북부권 혁신지원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있고, 사업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

2024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41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10월 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(안)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기관별 출연개요

연번	대상기관	출연목적 및 필요성	출연금액 (단위:천원)	관계법령 (출연근거)
1	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'19.6월)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특구 육성사업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○ 공공연구성과 확산,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지원 및 투자 연계로 기업성장 및 지역 경쟁력 강화	45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 (출연 및 보조금)
2	(재)충북과학 기술혁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R&D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 기능 수행○ 남·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신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, 지역산업 지능화·고도화 전략 마련	1,004,44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)○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(촉진지구에 대한 지원)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과학기술정책과 신성장정책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유희남	김영옥	강혜리	8415

기관명	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 : 강병삼 ○ 소재지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(도룡동 4-27) ○ 규모 : 11본부(11실, 16팀), 1부(1팀), 정원 총 170명 ○ 주된사업 : 연구개발특구 육성, 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							
출자·출연 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450백만원(도비)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							
	구분	사업기간	2023년 예산액	2024년 요구액	재원별			
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
충북청주 개발특구 육성사업	'24.3.10. ~'25.3.9.	450	450	2,900	2,000	450	450	
※ 국비, 시군비는 재단으로 직접지원								
출자·출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'19.8월)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육성사업 추진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으로 반드시 지원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-2281호('21.8.26.) / 총 사업비 대비 지방비 30%, 국고 대비 40%이상 매칭 ○ 기존 광역특구에서도 매년 육성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 필요 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							
지도감독 부서인견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'19.6월)에 따라, 창업·기업성장 지원 및 특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○ 특구 중심의 '공공기술 발굴·이전→사업화→기업성장'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, 충북의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 건의드릴 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. 관계법령 발췌 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우리 도는 지역 R&D 강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충북연구개발특구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음
- 2019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충북을 포함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·고시되었고(현재 총 14개)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, 지자체 협약을 통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 - * ('19) 청주, 안산, 김해, 전주, 창원, 포항 등 6개 / ('20) 서울, 구미, 울주, 나주, 군산, 천안·안산 등 6개 / ('22) 인천, 춘천 등 2개
-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총 2.85km² 기술사업화 배후공간으로 구성하여('23년, 2.2km²→2.85km² 면적확장), 스마트IT부품·시스템 분야를 특화하여 육성 중임
-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 주도형으로 새롭게 도입된 소규모 고밀도 R&D특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강소특구 육성사업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,
- 총 사업비 대비 30%, 국고 대비 40%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*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-2281호('21.8.26.)
- 기존 5개의 연구개발특구(대덕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)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구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출연(30~45억원)해 왔으며,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자자체도 '20.~'23. 특구 육성사업을 위해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음
-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출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

2 출연금 검토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2년 결산액	2023 예산액(최종) (C)	2024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			기관요구액 (A)	실과검토액 (B)	증감 (B-A)	
충북청주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사업	450	450	450	450	0	0

※ 관련근거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-2281호(2021.8.26.)

- 총 사업비 대비 30%, 국고 대비 40% 이상

1-② 출연기관 현황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설립근거	법률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			전화번호 : 042-865-8800			
				www.innopolis.or.kr			
주요연혁	◦'05. 9. :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◦'12. 7. : 특구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범(명칭변경) ◦'19. 8. : 강소특구(안산,진주,창원,포항,창주,김해) 지정 ◦'20. 8. : 강소특구(구미,울산,군산,나주,홍릉,천안) 지정 ◦'22. 6. : 강소특구(인천서구, 강원춘천) 지정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정부출연기관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	
인원현황 ('23.06.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158명		147명		11명		
임원 ('23.08.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이사장	강OO	(前)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		2021.03.05.~2024.03.04. (3년)		
	비상임이사	임OO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		당연직		
	비상임이사	황OO	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		당연직		
	비상임이사	손OO	경북대학교 교수		2022.12.29.~2024.12.28		
	비상임이사	김OO	동서대학교 총괄부총장		2022.12.29.~2024.12.28		
	비상임이사	부OO	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		2022.12.29.~2024.12.28		
	비상임이사	장OO	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		2023.08.07.~2026.08.06		
	비상임이사	김OO	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		2023.08.07.~2026.08.06		
주요기능	○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1. 특구육성사업 2. 제도지원 3. 특구개발 관리 4. 특구 인프라 지원						
자본금 (단위: 백만원)	41,263 ('22.12월 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 백만원)		33,506(출연) ('22.12.31.기준)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21	2022	2023	재무현황 (백만원) ※'22.12.31.기준	자산	73,763
	예산액	180,129	190,704	189,017		부채	11,714
	지자체 지원액 (출연금)	800	900	900		자본 (자산-부채)	62,049
경영성과 (단위: 백만원) ※'22.12.31.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영업이익	
	227,283			227,550		△267	

1-③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과학기술정책과 신성장정책팀		출연	45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강소특구 공공연구기관·대학 등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사업화 전주기 지원으로 사업화 성과 창출
-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창업 촉진 및 유관 기관 연계 투자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 활성화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
- 기간 : 2024. 3. 10. ~ 2025. 3. 9.
- 출연액 : 450백만원(도비)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백만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합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비고
계	20,500	7,000	4,800	2,900	2,900	2,900	'22.부터 지방비 매칭 상향 (국고 대비 20% → 국고 대비 40% 이상)
국비	16,000	6,000	4,000	2,000	2,000	2,000	
도비	2,250	500	400	450	450	450	
시군비	2,250	500	400	450	450	450	

- 사업내용 :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, R&D기술사업화 지원, 기술창업, 지역 특화기업 성장지원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

□ 기대효과

- 공공 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, 특구 내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과 사업화 성과 창출
- R&D-사업화-재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

□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14개 특구가 사업계획과 사업별 예산 및 핵심성과 지표가 유사하나, 출연 의무 불이행시 육성사업 운영불가로 성과지표 미달성, 기업지원 중단과 그에 따른 특구별 평가 및 강소특구 2단계 사업에 불이익 우려

참고 1

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

□ 일반현황

- (특화분야) 스마트 IT 부품 및 시스템
- (위 치) 충북대 본교 및 오창캠퍼스, 오창과학산단 일부
- (사업기간) 2020 ~ 2024년(5년) * 특구 선정 2019.8.
- (사업예산) 205억(국160, 지45) * 24년 29억(국20, 도4.5, 청주시4.5)
- (면 적) 2.85km²(기술핵심기관 1.41km², 배후공간 1.44km²)
 - ※ 지정 당시 : 2.2km²(19.6.) → 면적 확장 : 2.85km²(23.2. / 배후공간 ↑0.65km²)
- (관리권자/관리기관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/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- (産·學·研 인프라) 대학 1개, 정부출연연 2개, 혁신기관 5개, 기업 254개
 - 기술핵심기관(대학): 충북대
 - 정부출연기관: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, 한국생명공학연구원
 - 기타혁신기관: 충북테크노파크, 충북과학기술혁신원,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KTC)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, FITI시험연구원
 - 기업수 : 총254개 기업 / 특화기업 128개
- (사업내용)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
- (지정혜택) ※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등
 - R&BD지원,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 등(특구 당 연 20억원 정도 국비)
 - 연구소기업,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(3년간 100%, 2년간 50%), 재산세(7년간 100%, 3년간 50%) 감면 등

□ 위치도 및 지형도면



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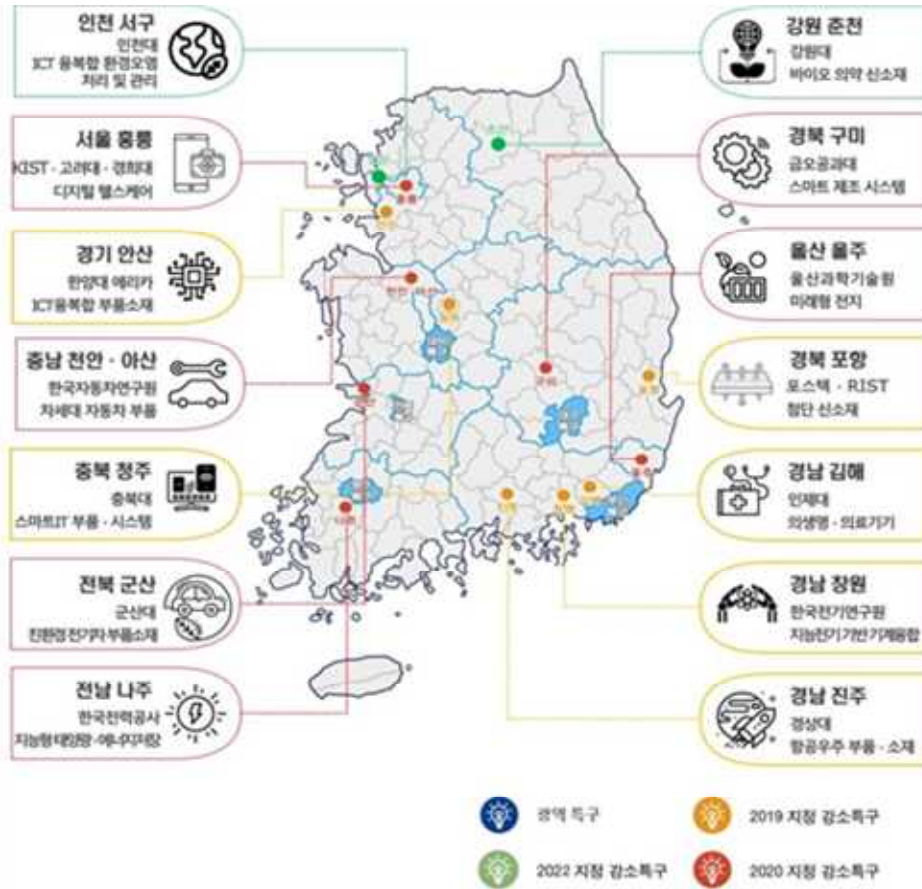
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구성(안)

(단위: 백만원)

강소특구 육성사업(안)	수행주체	예산	세부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강소특구 육성		2,840	
① 기술발굴 및 연계		480	
①-1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	기술혁신기관	4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발굴 및 연계 460 - (시장연계 유망기술찾기 및 연구소기업 설립) 200 X 1개(간접) - (강소특구간 연계협력 기술이전 지원) 200 X 1개(직접) - (연구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) 60 X 1개(직간접)
①-2 연구소기업 기술 가치평가	특구재단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가치평가 20
② 기술이전사업화		800	
②-1 기술이전 R&BD	특구재단	7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이전R&BD 700 * 연구소기업형 (200×2개 내외), 기술이전형(200×2개 내외)
②-2 협력 Value-up R&BD	특구재단	1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협력 Value-up R&BD 100
③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		500	
③-1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	기술혁신기관	47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노폴리스캠퍼스 470 * 창업 아이템 검증, 공백기술 매칭, 아이템 사업화 실증 지원, Track형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데모데이 운영
③-2 강소특구 연계협력 지원사업	특구재단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소특구 연계협력 지원 30 * 2개 이상 특구간 연계프로그램(사업화 기획 등) 지원 등
④ 강소특구 특화 성장 지원		1,060	
④-1 혁신네트워크 육성	기술혁신기관	2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혁신네트워크 육성 220 - 지역 혁신 네트워크 운영비 및 전문가 활용비 220
④-2 지역 특성화 육성	기술혁신기관	840 (지방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 특화기업 성장지원 840 - 미래기술융합제품혁신지원 540백만원 -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지원(INNO-BIG) 사업 150백만원 - 온라인 플랫폼 기업지원(IUM) 사업 150백만원
<input type="checkbox"/> 특구재단 간접비		60 (지방비)	
<input type="checkbox"/> 간접비 포함 예산 합계		2,900	합계

참고 3

전국 강소특구 지정현황



지정시기	지역(기술핵심기관)	면적	입주현황(개)	특화분야
'19년 지정 ('19.8.)	① 안산 (한양대 에리카)	1.73km ²	기업(312), 공공연(3), 대학(1)	ICT융복합 부품소재
	② 김해(인제대)	1.13km ²	기업(83), 공공연(1), 대학(1)	의생명·의료기기
	③ 진주(경상대)	2.17km ²	기업(247), 공공연(2), 대학(1)	항공우주 부품·소재
	④ 창원(한국전기연구원)	0.65km ²	기업(20), 공공연(1)	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
	⑤ 포항(포스텍, RIST)	2.72km ²	기업(193), 공공연(8), 대학(1)	첨단 신소재
	⑥ 청주(충북대)	2.85km ²	기업(254), 공공연(7), 대학(1)	스마트IT 부품·시스템
'20년 지정 ('20.8.)	⑦ 구미(금오공대)	2.57km ²	기업(303), 공공연(1), 대학(1)	스마트 제조 시스템
	⑧ 서울(홍릉) (KIST, 고려대, 경희대)	1.38km ²	기업(276), 공공연(1), 대학(2)	디지털 헬스케어
	⑨ 울산(울주)(UNIST)	3.01km ²	기업(142), 대학(1)	미래형 전지
	⑩ 나주(한국전력공사)	1.69km ²	기업(195), 공공연(2)	지능형 태양광·에너지 저장
	⑪ 군산(군산대)	2.70km ²	기업(127), 공공연(4), 대학(1)	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
	⑫ 천안·아산 (한국자동차연구원)	1.32km ²	기업(102), 공공연(1)	차세대 자동차 부품
'22년 지정 ('22.5.)	⑬ 춘천(강원대)	1.86km ²	기업(58), 공공연(4), 대학(1)	바이오 의약 신소재
	⑭ 인천(서구)(인천대)	2.22km ²	기업(124), 공공연(4), 대학(1)	ICT 융복합 환경오염 관리

참고 4

강소특구 사업 지방비[출연금] 매칭비율

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강소특구 사업 지방비(출연금) 매칭비율 상향 통보

1. 관련

- 가.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-584('21.8.24.,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통보(과학기술정보통신부))
- 나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「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」 제9조(협약)

2. 강소특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기획재정부 '21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(8.24)에서 의결되었으며,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총사업비 대비 30%(국고 대비 40%) 이상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강소특구 육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>

(단위 : 억원)

연도	특구 구분	국고	지방비	사업비 합계	
2022	'19년 지정	120 (특구당 20)	54 (<u>특구당 9</u>)	174 (특구당 29)	516
	'20년 지정	240 (특구당 40)	102 (<u>특구당 17</u>)	342 (특구당 57)	
2023	'19년 지정	120 (특구당 20)	54 (<u>특구당 9</u>)	174 (특구당 29)	348
	'20년 지정	120 (특구당 20)	54 (<u>특구당 9</u>)	174 (특구당 29)	
2024	'19년 지정	120 (특구당 20)	54 (<u>특구당 9</u>)	174 (특구당 29)	348
	'20년 지정	120 (특구당 20)	54 (<u>특구당 9</u>)	174 (특구당 29)	
2025	'19년 지정	-	-	-	174
	'20년 지정	120 (특구당 20)	54 (<u>특구당 9</u>)	174 (특구당 29)	

※ '19년 지정 특구 6개, '20년 지정 특구 6개 기준
끝.

1-④ 관계법령 발취

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(약칭: 연구개발특구법)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2조(특구육성사업의 추진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(이하 “특구육성사업“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하고,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·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.

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,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,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(자금의 조달)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.

1.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
3. 차입금(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4. 수익사업의 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*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*제48조(사업)

1. 특구의 개발 및 관리·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
2.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
3.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
4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
5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

2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과학기술정책과 신성장정책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유희남	김영옥	윤자원	8414

기관명	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	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: 김상규 ○ 소재지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○ 기관규모: 1단 2본부 ○ 주된사업: 지역 과학기술 진흥,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 								
출자·출연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: 1,004백만원(도비)	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								
	구분	사업기간	2023년 예산액	2024년 요구액	재원별				
	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
	R&D 인력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	'24.1.~12.	604	604	604	-	604	-	-
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	'24.1.~12.	200	200	640	-	200	440	-	
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	'24.1.~12.	200	200	500	-	200	300	-	
※ 시군비는 재단으로 직접 지원									
출자·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R&D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 기능 수행 ○ 남·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, 지역산업 지능화·고도화 전략 마련 								
근거법령	○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(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)								
지도감독부서의견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국비 사업 다수 확보 등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을 위해 석·박사급 R&D 인력 인건비 및 혁신지원센터 운영비 등 지원 필요 - 특히,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AI 제조기반 인프라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, 과학기술 확대 보급, 남·북부권 혁신성장 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 ○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 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. 관계법령 발취 								

2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본 기관은 '03년 7월 설립 후, 지역 주도 과학기술 진흥 정책 수립과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가상(VR)·증강(AR) 현실,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
 - '20년 6월 「충북과학기술혁신원」(기존 :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)으로 기관 명칭을 바꾸고 조직개편을 감행하는 등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기관 혁신을 위해 노력
 - 또한, '22년 신규사업 확보실적(102,475백만원)으로 전년도 실적(59,118백만원) 대비 73.3% 증가, 석·박사급 R&D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사업 확보 여건 조성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 도모
 - 특히,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남·북부권에 5대 혁신기관* 및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「혁신지원센터」 운영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AI 제조기반 인프라 구축, 과학기술 확대 보급 등 적극 수행으로 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도비 출연 필요
- * 충북테크노파크, 충북과학기술혁신원, 충북연구원, 충북기업진흥원,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
-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

2 출연금 검토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2년 결산액	2023 예산액(최종) (C)	2024 예산안			
			기관요구액 (A)	실과검토액 (B)	증감 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석박사급 R&D인력 인건비	495	515	604	604	-	89
부가세 환급금	100	89	-	-	-	△89
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	200	200	200	200	-	-
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	-	200	200	200	-	-

2-2 출연기관 현황

(재)충북과학기술혁신원

설립근거	법률 ① 민법 제32조,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③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		전화번호: 043-210-0800		
					홈페이지: www.cbist.or.kr		
주요연혁	◦'03. 7. :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등기 ◦'04. 1. :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통합 ◦'07.12. :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준공 ◦'18.10. :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개소 ◦'20. 6. :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명칭 변경 ◦'22. 3. :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 ◦'23. 1. : 선도연구개발지원단 선정 ◦'23. 3. :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 ◦'23. 6. : 산업디지털전환 지역거점기관 지정	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	
인원현황 (*23.9.30. 기준)	계		정규직		정원 외		
	99명		69명		30명		
임원 (*23.9.30.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의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이사장	김○○	충청북도 경제부지사		당연직		
	상임이사	김○○	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		2022.1.1.~2023.12.31.(2년)		
	비상임이사	김○○	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		당연직		
	비상임이사	이○○	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본부장		당연직		
	비상임이사	이○○	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		2021.10.8.~2023.10.7.(2년)		
	비상임이사	연○○	충북일보 대표이사		2021.10.8.~2023.10.7.(2년)		
	비상임이사	이○○	(주)유진테크놀로지 대표		2021.10.8.~2023.10.7.(2년)		
	비상임이사	정○○	(주)브이알북 대표		2021.10.8.~2023.10.7.(2년)		
주요기능	- 지역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-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가상(VR)·증강(AR) 현실, 블록체인 산업육성 및 활성화 -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획, 조사, 성과분석, 평가 등 정책 연구 - 첨단산업 기술 진흥, 산업기술 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- 뉴 콘텐츠 및 문화·관광산업 육성 -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						
자본금 (단위: 백만원)	50			출자·출연액 (단위: 백만원)		50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21	2022	2023	재무현황 (단위: 백만원) ※'22.12.31. 기준	자산	35,041
	예산액	36,534	71,428	70,461		부채	20,334
	지자체 지원액 (출연금)	565 (도)	795 (도)	1,004 (도)		자본 (자산-부채)	14,707
경영성과 (단위: 백만원) ※'22.12.31. 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51,845			49,669		2,176	

2-③-1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석·박사급 R&D 인력 인건비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과학기술정책과		출연	604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석·박사급 우수 R&D 인력 지원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으로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·기획·육성을 위한 도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·기능 수행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R&D 인력 인건비
- 기간 : 2024. 1. ~ 12.
- 출연액 : 604백만원
- 주요내용 : 신성장동력산업 발굴·기획을 위한 R&D 인력 지원

□ 산출기초

- 석·박사급 R&D 인력(8명) 인건비 지원(604백만원)
※ R&D 신규인력 증원(7명→8명) 및 인건비 상승율(3%) 반영 편성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합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출자	-	-	-	-	-	-
출연금	2,762	394	565	595	604	604
인건비	2,159	80	465	495	515	604
부가세환급금	389	100	100	100	89	-
기관운영비	214	214	-	-	-	-

□ 기대효과

- 지역 R&D 거점기관으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, 지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력 확보

□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과기원의 안정적인 재단운영 어려움 발생으로 R&D전담기관의 역할 수행에 한계, 과학기술과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기 대응 곤란

2-3-2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과학기술정책과		출연	20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산업혁신·신산업 발굴 등을 지원하는 도내 혁신기관* 청주권에 집중
* 충북과학기술혁신원, 충북테크노파크, 충북연구원, 충북기업진흥원,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
-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도 공공기관 분산 배치 실현 등을 위해 북부권에 산업혁신 및 신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관리체계 운영 필요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
- 기간 : 2024. 1. ~ 12.
- 출연액 : 200백만원
- 주요내용 :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·운영비 지원

□ 산출기초

-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도비 부담금 일부 지원

※ 소요예산 640백만원(도 200, 충주 390, 단양 50)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합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출자	-	-	-	-	-	-
출연금	600	-	-	200	200	200

□ 기대효과

-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북부권 기업지원 강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·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

□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과기원의 재정 여건상 북부권 신산업 발굴·육성 등 역할 수행 및 공약 이행에 어려움 발생, 지역산업 균형발전 대응 곤란

2-③-3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과학기술정책과		출연	20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도내 혁신기관의 청주권 집중으로 남부권 산업체와의 연계성 및 접근성이 낮아 산업생태계 변화에 능동적 대응 곤란
- 남부권 산업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신사업 발굴 및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성장·발전 견인

* 공약사항 : 도 공공기관 분산배치(94-5.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)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·운영
- 기간 : 2024. 1. ~ 12.
- 출연액 : 200백만원
- 주요내용 :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·운영비 지원

□ 산출기초

-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도비 부담금 일부 지원

※ 소요예산 500백만원(도 200, 보은·옥천·영동 각 100)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합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
출자	-	-	-	-	-	-
출연금	400	-	-	-	200	200

□ 기대효과

-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남부권 기업지원 강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·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

□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과기원의 재정 여건상 남부권 신산업 발굴·육성 등 역할 수행 및 공약 이행에 어려움 발생, 지역산업 균형발전 대응 곤란

2-④ 관계법령 발취

●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'22. 12. 30.)

제6조(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) ① 충청북도지사는 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('23. 7. 4.)

제18조의5(촉진지구에 대한 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·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.

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'20. 12. 10.)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